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1294호 2020년 11월 20일(금)

공 고

○ 속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행 행정명령 공고 ····· 2

입법예고

○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예고 ····· 8
○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 14
○ 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예고 ····· 25
○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예고 ····· 39

발행 : 공 보 감 사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공고 제2020 - 1109호

속초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관내 아래와 같은 중점관리시설 등 장소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의무화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속 초 시 장

1.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 제80조 · 제83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권자 : 속초시장

3. 행정명령 기간 : 2020. 11. 17. ~ 별도 지정 시 까지

4. 과태료 부과대상 시설 및 장소

부과장소	부과대상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 버스(관광)·지하철·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노인)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 경기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관련 부서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가.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1단계 150㎡ 이상, 1.5단계 부터 50㎡ 이상)

나.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6. 과태료 금액 및 마스크 종류

가. 과태료 금액

- 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나. 마스크 종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으로 인정
-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착용법

- 마스크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리도록 착용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라.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상황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7. 기타사항

가. 처분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 이후에도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중점관리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으로 지역사회 감염 예방 필요

나.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확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담당부서

붙임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담당부서

구 분	부과대상	시설구분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중점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유흥주점	환경위생과(지상우) 639-2684
		단란주점	환경위생과(지상우) 639-2684
		콜라텍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과(김도연) 639-212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과(김연화) 639-2801
		식당, 카페 (영업신고 면적 150㎡이상 일반, 휴게음식점 / 뷔페포함)	
일반관리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PC방	문화체육과(김도연) 639-2129
		결혼식장	여성가족과(김정혜) 639-2061
		장례식장	여성가족과(구제성) 639-2673
		학원(교습소포함)	교육청소년과 (주희현) 639-2049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예산담당 (639-6070)
		독서실	
		공연장	문화체육과(김도연) 639-2129
		영화관	문화체육과(김도연) 639-2129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광과(함영일) 639-2541
		오락실, 멀티방	문화체육과(김도연) 639-2129
		목욕장업	환경위생과 (오성현, 최정임) 639-2241
		실내 체육시설	문화체육과(박준형) 639-2103
		이·미용업	환경위생과 (오성현, 최정임) 639-2241
		상점·마트·백화점	일자리경제과(최미나)

구 분	부과대상	시설구분	담당부서(담당자) 전화번호
			639-2361
		스터디카페	환경위생과(이은주) 639-2809
대중교통	대중교통의 이용자	시외버스	교통과(이예지) 639-2366
		시내버스	교통과(이예지) 639-2366
		택시	교통과(이진주) 639-2368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각 속초시청 소관부서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최종원) 639-2920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요양원, 주야간보호시설	여성가족과(김민진) 639-2159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문화체육과(박찬웅) 639-2958
실내 스포츠 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문화체육과(박준형) 639-2103
관련 부서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각 속초시청 소관부서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39호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1. 17. ~ 2020. 11. 2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이영순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이영순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1. .
발 의 자 : 이영순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속초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책무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안 제4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안 제5조 ~ 제6조)
라. 민간단체 등 지원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
2) 조례안 예고 :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속초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40호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1. 17. ~ 2020. 11. 2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강정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정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1. .

발 의 자 : 강정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속초시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비용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안 제4조 ~ 제5조)

다.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제10조)

라.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촉진 (안 제11조)

마. 상생협력사업 및 직거래장터 운영 (안 제12조 ~ 제13조)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시 관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5.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속초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등 안전성 검사
2.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농업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속초시의회 의원
2.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를 총괄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 등에게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상생협력사업) ① 시장은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

자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 장터”라 한다)를 개설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직거래 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해당 지역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농업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41호

「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1. 17. ~ 2020. 11. 22.(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1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김명길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김명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1. .
발 의 자 : 김명길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에너지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 9조)
다.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에너지법」 제4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 제8조, 제28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6조, 제27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2) 조례안 예고
3)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등에 따라 속초시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에너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활용에너지”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에너지사용에서 높은 효율성으로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자재 및 설비를 말한다.
3.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4. “에너지빈곤층”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속초시 에너지(이 조례에서 “에너지”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1.「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2.「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 그 밖에 에너지 관련 법령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수급(需給) 체계의 구축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 장려

3. 온실가스 배출 등의 최소화 노력

4.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과 시 소재 기업·시민단체·연구기관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 협력 및 권장

②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제품의 제조·가공, 유통·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시민, 법인·단체 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 수급구조의 체계적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강원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바탕으로 속초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에너지계획에는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에너지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모범사례 발굴·보급의 세부계획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전문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에너지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과 배출가스 저감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3.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
4. 시민, 사업자,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너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너지 절약 등) ① 시장이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절감목표의 설정 및 관리
2.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절약방안
3. 공공건물의 효율제고를 위한 에너지진단 실시
4. 관용차량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적정 실내온도 준수, 창호개선 등을 통한 공공청사의 유지관리비 절감
6. 관련 절약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해당 민간부문에 권장할 수 있다.

1. 시민의 자발적 실천
2.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3. 상가 간판 등의 지역에너지절약에 맞도록 관리

4. 건축물의 개·보수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5.「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체결 사업자의 지원
7.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및 다양한 방식의 교통체계 마련
8. 자전거 전용도로·주차장 확대 등 이용시설 확충 및 활성화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시 지역 신·재생에너지 생산·공급비중 확대 및 에너지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2. 생산·이용시설 설치 확대 및 유지관리
3. 제2호의 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4. 생산·보급·이용 확산을 위한 마을, 공동주택, 기업 등 지역공동체 단위의 시범사업, 시범구역 지정·운영 및 사회적기업 육성
5. 민간 건축물에 대한 관련 설비 도입 권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부담
2. 에너지사업 중 해당 설비 설치

③ 제2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건물
3. 경로당
4. 마을회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9조(에너지빈곤층 복지증진) 시장이 에너지빈곤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공급
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에너지위원회) ① 시장은 에너지 수급구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속초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에너지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
3. 전문가와 시민, 사업자, 법인·단체 등의 의견청취 및 반영
4. 관계공무원, 법인·단체 등의 선진지 비교시찰 및 견학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에너지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법인·단체 등 및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속초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라. 시 소속 관계공무원
   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

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건강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5.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준용) 에너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및 환수, 위원회의 여비·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등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속초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⑤ 생략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펌프
2. 산업건물용 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②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

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4. 생략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

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③ 생략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평가 업무는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평가 결과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속초시의회 공고 제2020-42호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속 초 시 의 회 의 장(관인생략)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참조

2. 기 간 : 2020. 11. 18. ~ 2020. 11. 23.(6일간)

3. 의견제출

가.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속초시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의회 의장(대표발의 최종현 의원, 속초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할 곳 : 24826/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의회
최종현 의원(☎ 033-639-2048, FAX 033-631-917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lucky7chise@korea.kr), 시의회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의견서 예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제출의견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 기타 참고사항

○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최종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일자 : 2020. 11. .

발 의 자 : 최종현 의원 외 인

1. 제안이유

고령화 시대에 고령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 문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층임에도 장애인이 고령이 되어 노인복지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 동일한 수준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복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한 노년기 삶에 질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나.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고령장애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안 제9조)

바.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나. 기 타

1)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2) 입법예고 결과

2)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다. 생략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차. 생략

3~6. 생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